성주군 영유아보육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

1. 제 안 자 : 성주군수

2. 개정이유

○ 법률의 위임 없이 조례에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고 있는 위탁 제한 조항(제20조)을 삭제하여 위탁사업자에게 공정한 경쟁기회 부여하고자 함.

3. 주요내용

○ 위탁의 제한조항 삭제(안 제20조)

- 수탁자 1명에게 1개 어린이집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한 조항 삭제

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4조 및 「지방자치법」 제22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규제심사 : 해당 없음 [기획감사실-8272('17. 9.11.)]

라. 성별영향평가 분석 : 해당 없음 [주민복지과-53801('17. 9.29.)]

마. 입법예고 : 의견 없음(예고기간 : '17. 9.21. ~ '17.10.11.)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 개정안은 「성주군 영유아 보육조례 제20조(위탁의 제한)」조항을 삭제하여 위탁 희망자에게 어린이집 1개소 위탁으로 제한한 규정을 2개소 이상의 어린이집 위탁도 가능하게 함으로써 위탁사업의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으로써,

○ 검토결과 관련법령에 적합하고, 자치입법 입안 심사기준에 합당하며, 주민 불편·부담 완화를 위해 정부에서 추진 중인 규제개선 사항에도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조례를 일부개정·시행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